

부산광역시사하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사유

업무처리변경 및 상위법·관련규정 개정에 따라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주민등록증 재질이 백지용지에서 플라스틱증으로 교체되어 주민등록증 백지용지 관리조항을 삭제(안제2조제1항제1호)
- 나.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및 위반자 조치사항은 사하구사무의 내부위임규정에 의거 동에서 위임처리하고 있는 사항으로 관련조례를 일치시키코자함. (안제2조제1항제3호, 안제2조제1항제4호)

3. 관계법령

- 가. 주민등록법 제2조, 제17조의 8, 제21조
- 나. 부산광역시사하구사무의내부위임규정 ('99.8.10 훈령제100호)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법 제2조 제2항에 의거 주민등록사무와 관련하여 동장에 위임된 업무를 “사하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와 “사하구 사무의 내부위임규정”과 일치시키려는 사항과 주민등록증 재질이 백지용지에서 플라스틱으로 변경됨에 따라 주민등록증 기재 양식에 따라, 자료를 입력해주면 조폐공사에서 제작함으로 백지용지를 보관하는 일이 없어짐에 따라 관리조항(제2조제1항1호)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 조례 제2조 제1항 1호의 백지용지 관리조항 삭제는 현 제도에 맞게끔 정비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으나
- 조례 제2조 제1항 3호 4호 삭제는 조례를 “사하구 사무의 위임규정”에 맞추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데 본 조례 제2조 제1항 3·4호에 의거 동장에 위임금지된 업무를 ‘99. 8. 10자 사하구 훈령 제100호로 동장에게 위임하였으며, 이는 그 당시에 본조례도 개정되었어야할 사안이었으나, 당시 담당공무원의 업무 미숙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작금에 와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정하려는 것은 다행이라 생각되므로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2003. 10.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윤명성